

교육대학원 시행세칙(2-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거 교육대학원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입 학

제3조(입학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입학지원제출서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전형료와 함께 본 교육대학원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소정양식) 1부.
2. 4년제 대학 졸업(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부.
3.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총 교육기관 근무경력 명기 된 것에 한함) 1부.
5. 사진 (반명합판 : 3cm×4cm) 2매.
6. 기타 교육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5조(선발인원) ① 입학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하며, 각 전공별 기준정원은 총 정원을 총 전공수로 나눈 인원으로 한다.(개정 2006.7.18)

② 총 지원인원이 총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전공별 지원인원이 기준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원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06.7.18)
2. 각 전공별 기준정원의 200%를 초과한 전공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을 우선 감 할 수 있다.
3. 전공별 기준정원은 초과했으나 200%를 초과한 전공이 없을 경우에는 각 전공별 기준정원에 의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제6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구술(면접)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류심사에서는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4조의 입학지원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지원 자격

을 심사한다.

③ 구술시험은 교육일반 및 전공교과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학적능력 여부를 전공지식, 전공적성, 학업성취의욕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제1항의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이외에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전형위원) 교육대학원장은 각 전공의 주임교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26.)

1. 서류심사 (전적대학 4년 평점평균 성적) : 210점 만점
2. 구술시험 : 90점 만점
3.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100점 만점), 구술시험 (100점 만점), 실기 또는 필기시험 (100점 만점)으로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또는 실기시험(필기시험)은 입학전형위원 3인의 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한 점수가 1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현직 교원은 각 호의 교직근무경력에 따라 총 취득점수의 5%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을 포함하여 만점(300점)이상의 점수를 절삭한다.

1. 교육경력 1년~6년 미만 : 총점의 2%(6점)
2. 교육경력 6년 이상~11년 미만 : 총점의 3%(9점)
3. 교육경력 11년 이상~16년 미만 : 총점의 4%(12점)
4. 교육경력 16년 이상 : 총점의 5%(15점)

④ 교직 근무 경력 기산일은 경력증명서상 정식교원으로 임용된 날을 시작으로 하고 교육경력 최종일은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⑤ 상기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시의 사정 우선순위는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성적 상위자
2. 구술시험성적 상위자
3. 연장자

제9조(합격의 결정) ① 교육대학원장은 학칙 제49조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입학시험 성적 등을 대학원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행세칙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선발인원 및 입학전형 성적 등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장 등 록

제10조(등록의 종류) 교육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 : 수업연한 내에서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2. 입학, 편입학, 재입학 등록 :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
3. 논문등록 :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4. 연구생 등록 : 학위 과정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
5. 교과목 등록 :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학등록) ①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입학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제4장 교과과정 · 전공변경 · 수강신청 · 학점 · 선수과목

제12조(교과과정 편성운영)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공단위로 전공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교과목의 구분) 석사과정의 교과목은 일반교육학(교직이론),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으로 구분한다.

제14조(교과과정의 편성 절차) ① 각 전공주임교수는 교육과정(안)을 그 교과과정이 시행되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직 교육과정(안)은 교직전공주임이 작성한다.
- ③ 원장은 각 전공주임이 제출한 교과과정(안)을 종합하여 전체 교과과정(안)을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15조(교과과정 편성원칙) 각 전공의 교과과정(안)에는 전공의 교육목적 및 목표 교과과정 개편취지 및 주안점, 교육과정표, 이수원칙, 대체과목 등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학위번호수여) 각 전공과정의 교과과정은 교과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분하며 교과과목의 학수번호는 학과코드 3자리와 교과목 코드3자리를 부여한다.

제17조(교과목 개요) ① 각 전공의 교수는 교과과정의 해당 교과목의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과목 개요에는 교과목의 목표, 주요내용, 필수선택, 선·후수과목 표시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교과과정의 일부변경) 교과과정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일 2개월 전(1월, 7월)까지 해당 전공주임이 교수회의록을 첨부하여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교과목의 개설) 각 전공주임교수는 교과과정에 따라 개설할 교과목에 관한 사항을 매 학기 개강 2개월 전(1월, 7월)까지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개설교과목 변경) 개설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 주임교수가 개설 교과목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수업일수) 석사과정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2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소정양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2주일 전까지 교육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전공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학기 말(8월, 2월)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② 전공변경 신청은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인 자로서 변경전과 변경후 전공주임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한다.

- ③ 전공변경자의 이수학점은 신 전공의 교과과정에 의거한 전공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신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전공변경원) 전공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이수학점 및 성적표

제25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3월, 9월)전 2주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또는 수강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수강신청의 변경) 수강신청한 과목의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종료 후 3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수강신청 변경원을 교육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수영역별 취득학점) 학생은 일반교육학(교직이론) 4학점, 교과교육학 8학점, 교과내용학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자는 교직이론을 이수과목에서 제외한다.

제28조(중복이수 금지) 학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학 중 같은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29조(선수과목 이수) ① 학사과정의 전공 또는 부전공이 석사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자로서 각 전공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는 각 전공이 지정하는 2과목(6학점)이상의 선수과목을 전공별 내규에 의거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10.26)

② 선수과목의 이수여부 및 이수과목은 개강일 (3월 2일, 9월1일)전까지 각 전공주임이 결정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 후 선수과목명을 매학기 개시일 이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선수과목은 매 학기 1과목 (3학점) 이내로 교육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이수 할 수 있다.
- ④ 선수과목의 학업성적은 C학점 이상을 이수로 인정하며, 수료학점에 산입한다. 단, 부전공자의 경우 대체과목이 부족할 경우 이를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5.10.26)(개정2011.5.31)
- ⑤ 비 동일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중 지역문화교육과 교육행정의 전공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선수과목을 면제 할 수 있다.
- ⑥ 대학 또는 대학원 유사학과 출신으로 전적성적표에 동일과목을 이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별 내규에 따라 2과목에 한해 면제해줄 수 있다.(개정 2005.10.26)

제30조(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 교육대학원의 학업성적 등급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F	0 ~ 69	0

제31조(성적인정) 성적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총 수업일의 3/4이상, 성적등급은 C0(2.0)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B0(3.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2조(학점)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한 교과목 당 2학점으로 하고, 1시간 1학기(15일) 강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제33조(부전공 과정 의 이수) 중등학교 현직 교사가 그 자격증에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과 표시 받고자 하는 부전공 과목이 동일 하여야한다.
- 2. 부전공 이수과목 및 학점은 학위청구논문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2005.10.26)
- 3. 부전공표시자는 교과교육영역 6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재학기간 내에 추가 이수하여야 한

다.(개정 2005.10.26)(개정 2009.6.3)

제5장 편 입 학

제34조(편입학) ① 동일한 계통의 학과 또는 전공에 한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는 2학기 이내에 편입학을 할 수 있다.

② 타교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 전공의 대체 과목으로 선정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편입학전형) 교육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따른 학생선발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신입생 전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6장 학점인정 및 수료

제36조(학점인정의 신청)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인정 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8)(개정 2007.10.17)

제37조(제출서류) 전조의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점 인정원
- 2.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개정2006.7.18)
- 3. (삭제)(개정2007.10.17)

제38조(인정과목) 본 교육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국내·외 대학원 또는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동일 명칭의 과목.(개정2006.7.18)
- 2. 제1호의 기관에서 이수한 유사한 명칭의 과목으로서 전공주임교수가 동일 교과목이라고 인정한 과목.

제39조(인정방법) 국내·외 타 대학원 인정과목은 12학점 이내를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평균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개정2006.7.18)

- 1. (삭제)(개정2007.10.17)
- 2. (삭제)(개정2007.10.17)

제40조(수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한다.

- 1. 학칙 제26조의 학점을 취득한 자.

- 2. 4학기 이상 등록을 완료한 자.
- 3.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제41조(수업연한)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최소 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1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수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며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외국어 시험

제42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의 실시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제43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자격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자.

단,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개정2011.5.31.)

제44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1주일 전까지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시험위원) 교육대학원장은 각 전공주임 교수에게 2인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제46조(시험방법) 외국어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0.17)

제47조(출제범위) 외국어시험은 외국어 능력이 각 전공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는 범위로 한다.

제48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49조(합격인준) 외국어시험 결과는 교육대학원장이 채점결과에 대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자를 공고한다.

제50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기 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으며 재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8장 종합시험

제51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실시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로 한다.

제5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1주일 전까지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자격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자.

단,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개정2011.5.31.)

제54조(시험위원) 교육대학원장은 각 전공주임교수에게 2인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을 추

천받아 위촉한다.

제55조(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종합시험은 교과 교육학을 포함 한 전공과목 중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채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57조(합격인준) 종합시험의 결과는 교육대학원장이 채점결과에 대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합격자를 공고한다.

제58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과목은 차기 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재 응시 횟수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장 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 계획서

제59조(논문계획서 제출 및 지도교수 배정) ① 제3학기 학생은 해당 학기 시작 후 4주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한 후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된 논문의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목 변경원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분으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교육대학원장은 위와 동등한 학문적 자격을 갖춘 교외인사를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단독 또는 공동지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61조(학위논문중간발표) 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한 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 중간발표를 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논문 중간발표는 논문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전공주임교수 및 관련 전공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중간발표 후 그 결과를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육대학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2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지도교수의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논문지도가 불가능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고,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할 때에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때에는 시행세칙, 59조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 또는 교외인사로 할 수 있다.

제63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① 교육대학원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8.8.12)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4.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당해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단,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개정2011.5.31.)

5. 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② 비 논문 신청자의 연구보고서 제출도 이에 준한다.

제64조(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1부.
2. 지도교수추천서 1부.
3. 학위청구논문 3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65조(논문제출 시한) 학위논문은 수료일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군 의무복무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논문제출 시한을 넘겼을 경우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출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66조(논문심사위원 선정)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전공주임교수를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2. 교육대학원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67조(심사위원수와 자격) ① 제출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교내·외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③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 ④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된다.

제68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교육대학원장에게 보고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69조(학위청구논문의 구분) ① 각 학위과정의 논문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행한다.

②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며 주심1인과 부심2인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70조(학위청구논문 심사방법) ① 예비심사는 제출된 학위청구논문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지적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 논문제출자에게 부분, 인용문헌, 역본, 모형, 표본 기타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논문의 체제가 소정의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자구의 잘못 등을 조사한 후 최종 판정한다.

③ 예비심사와 본 심사는 심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예비심사결과 논문내용이 학위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 시킬 수 있다.

⑤ 석사과정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논문 및 구술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와 함께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 요지를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비 논문 신청자는 전공 6학점 추가 취득으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총30학점 취득)

⑧ 비 논문 신청자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에 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대학원장의 심사를 통과한 연구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1조(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보완하여 한 학기가 경과한 후 제출 할 수 있다.

제72조(심사의 연기)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 하다고 결정 하였을 때에는 논문 심사를 보류하고 전공주임교수 명의로 심사 학기 연기 신청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도 작성할 수 있다.

제74조(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체제) ① 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10.17)

1. 판종 : 4,6배판 (19cm × 26cm)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백상지
3. 인쇄방식 : 횡서로 작성하여 인쇄하되, 석·박사 학위논문은 워드프로세싱 명조체 10~12 point크기로 한다.
4. 표지색상 : 학위논문은 흑색, 연구보고서는 회색 레자크

제11장 장학금 · 포상 · 징계

- 5. 제본형식 : 논문(클로스 양장), 연구보고서(무선철 반양장)
- 6. 표제인쇄방식 : 별지양식, 신명조체 20point, 활자 (금색)
- 7. 속 표제 인쇄방식 : 별지양식
- ② 논문 및 연구보고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과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표제지 : 서식 1,2에 따른다.
 - 2. 백지간지
 - 3. 속표지 : 서식 3에 따른다.
 - 4. 제출서 : 서식 4에 따른다.
 - 5. 인준서 : 서식 5에 따른다.
 - 6. 감사의 글 : 필요한 경우
 - 7. 논문목차 : 서식 6에 따른다.
 - 8. 표 및 그림목차(필요시)
 - 9. 본문 : 일반적인 논문작성 절차에 따른다.
 - 10. 참고문헌 : 일반적인 논문작성 절차에 따른다.
 - 11. 부록, 색인, 기타 : 필요한 경우
 - 12. 논문초록 : 서식 7에 따른다. (외국어로 작성)
- 제75조(논문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 시 소정의 심사료를 교육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6조(논문제출부수) 논문 최종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소정 기일 내에 심사위원의 서명이 날인된 학위논문 4부 및 저작물이용허락서(소정양식)1부, 학위논문 내용이 저장된 디스켓 또는 CD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위수여

- 제77조(목적) 본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33조 학위수여 및 제35조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8조(학위수여의결) 교육대학원장은 학위수여대상자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79조(학위수여) 학위는 본 대학원 학칙 제4조의 <별표2>의 학위종별에 따라 교육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 제80조(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 제81조(장학금) ① 교육대학원의 장학금 종류에는 학비보조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그 종류로 구분 지급 한다.
 - ② 공무원, 초·중·등교사, 현역군인, 대학 교직원, 학교법인건양학원직원 및 본교와 협약 관계에 있는 기관,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2조(학술활동 지원금) 교육대학원생이 현직 또는 전공과 관련한 연구논문을 전문학술지 등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등재 시에는 학술활동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3조(포상) 교육대학원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 1. 학업 및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 2. 선행에 있어서 표창할 만한 자
- 제84조(징계) 교육대학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의견서와 함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징계한다.
 -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 2. 학업성적이 극히 열등하여 각 과정의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 3.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면학질서를 심히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 4. 원내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대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한 자
- 제8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12장 공개강좌(연수과정)

- 제86조(공개강좌) ① 교육대학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 또는 단기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공개강좌(연수과정)는 직무와 관련되는 학술 연구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공개강좌(연수과정)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수업, 모집인원, 수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 ③ 공개강좌(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실비에 한하여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2011.5.31.기준

다만 본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공개강좌(연수과정)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제87조(중등교육연수원)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등교육연수원을 설치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이전의 교육대학원 시행세칙은 폐지하며, 종전의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 33조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